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6

발 의 년 월 일 : 2022년 09월 19일
발 의 자 : 이병윤 의원(1명)
찬 성 자 : 경기문, 고광민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용일, 김원중, 김원태, 김지향, 김춘곤, 박영한, 봉양순, 서상열, 서호연, 소영철, 신동원, 심미경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영실, 이종태, 최민규, 최유희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행 조례상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· 관리 및 확대 등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해 “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위원회”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, 위원회 구성이 공공기관, 연구원, 학교, 기업, 민간단체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음

○ 또한,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계획수립의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설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음

○ 따라서,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영지구에 대한 기본정책과 재정지원 정책 등을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의원, 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자는 매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의 구성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관련협회 전문가 등에 대한 위촉근거를 마련함 (안 제5조제2항제1호)

나.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함 (안 제16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공공기관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, 공공기관”으로, “민간단체 중”을 “민간단체, 협회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수립·시행”을 “매년 수립·시행”으로 한다.

부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	② ----------.
1. 위촉직 위원: 공공기관, 연구원, 학교, 기업,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	1. --------- 서울특별시의회, 공공기관---------- 민간단체, 협회 등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자율주행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① ~ ③ (생 략)	제16조(자율주행시설의 설치·관리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·관리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④ ---------- 매년 수립·시행----.